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 수수 금지〉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97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11. 11.
3. 회부일 : 2025.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금액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금품 수수의 명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최저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② (생략)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u>사고</u> · <u>의례</u> 또는 <u>부조의 목적으로</u> 제공되는 <u>음식물</u> · <u>경조사비</u> · <u>선물</u>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사고</u> <u>또는 의례</u> ----- <u>-음식물</u> · <u>선물</u> ----- ----- -----. ----- ----- ----- -----

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
 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
 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
 ·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
 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 7. (생 략)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
 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⑤ (생 략)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
 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
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
 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

 -----.

3. ~ 7. (현행과 같음)

8. -----

금품등(부조 목적의 경조사비
는 제외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3배

 -----.

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 를 취소한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금액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현행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1)에서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8조제3항 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별표1]2)에서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5만원)·경조사비(5만원. 단, 축·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
화는 10만원)·선물(5만원)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15만원)’은 설날·추석 전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
위를 두 배(30만원)로 허용하고 있음.

- 법 제8조제3항제2호는 공직자들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기 위해 예외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국민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 규율을 위해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함.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에 대하여는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로
완화하면서도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행령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기간 및 가액이 완화되는 것을 방지
하려는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음.

- 개정안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최저 수준을
금품등 가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경조사비가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
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금품 수수의 명목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령상 경조사비의 허용 자체가 과도한 수준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며,³⁾ 원활한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5만원 이하로 가액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5만원 이하’는 필요최소한의 한도라고 볼 여지가 있음.

○ 「청탁금지법」 시행 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는 경조금품의 가액기준을 5만원으로 규정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제정 시에는 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을 ‘10만원 이하’로 규정한 바 있음.⁵⁾

3)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청탁금지법 해설집(2024)」, p.151)

4) 「청탁금지법」 시행과 맞추어 개정되기 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는 경조금품의 가액기준을 5만원으로 규정하였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 전)」 제15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5) 청탁금지법령 제정 이후인 2018년 금품 수수를 더욱 엄격히 규율하기 위해 경조사비 상한을 현행과 같

- 법 제정 시 경조사비의 허용 가액기준 금액은 당초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동 법의 입법취지 및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⁶⁾

□ 둘째, 개정안과 같이 사회상규상 상호부조 목적인 경조사비를 금액과 무관히 원천적으로 불허하게 될 경우 오히려 사회상규에 반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를 과도하게 위축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개정안을 입법할 경우 축의금·조의금 외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까지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⁷⁾은 경조사비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화환·조화는 금품 수수의 명목으로 악용될 소지가

이 5만원으로 하향함.

6) 특히,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1,500명, 공직자 300명, 사립학교 교원 300명, 언론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대 상	음식물 가액기준(만원)				선물 가액기준(만원)				경조사비 가액기준(만원)			
	3	5	7	10	3	5	7	10	5	7	10	20
일반국민	46.5	33.5	3.7	14.0	25.5	35.3	4.6	30.1	45.5	6.3	37.5	7.8
공직자	52.7	35.0	2.3	8.0	36.7	40.0	2.3	17.3	66.3	4.7	23.3	4.3
사립학교 교원	39.0	41.7	4.7	14.0	24.7	36.0	3.3	30.3	48.7	3.3	41.3	5.7
언론인	23.5	36.5	8.0	27.5	15.0	28.5	6.5	42.5	26.0	6.0	52.5	10.0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축의금·조의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경조사비의 원천적 수수 금지를 통해 현행 제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직무관련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비 수수를 일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